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
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보장과 영농 세대전환 활성화를 위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대상자의 영농경력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 개선(안 제5조제1항제2호)

- 1) 현행 영농경력 기준은 10년 이상 연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질병·사고 등으로 영농이 중단된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.
- 2) 이에 ‘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종사’ 요건을 ‘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’으로 완화함.
- 3) 질병·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 세대전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.

나.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제한 대상자 오기 수정(안 제5조제2항제1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
일부개정령안

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“제13조제3호”를 “제13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2. 선정신청일 기준 농업경영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농업인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)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.	제5조(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) ①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. 다만,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.</u>	2. <u>선정신청일 기준 농업경영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농업인</u>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. 다만,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u>제13조제3호</u>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. 2. (생략)	<u>제13조제1항제3호</u>----- ----- -----. 2.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74